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5. 27 선고 2021나106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5. 27 선고 2021나1063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합503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변론 종결2022. 4. 15.

판결 선고2022. 5. 27.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합503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 부평구 D 공장용지 20,969.3m², E 공장용지 20,969.2m² 중각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4. 10. 7. 체결된 합의서 중 제4항의 인천지방법원 2010. 3. 26. 접수 제17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0. 3. 26. 접수 제174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6행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820)를 제기하여"를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F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820(본소), 2013가합42477(반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3행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878)"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878(본소), 2014나5885(반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안 3행의 "이 사건 판결문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18행부터 10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11,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2013. 9. 5. '원고, P, Q, R(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F에게 4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2306)이 선고되었고, 이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4. 10. 7. '원고 등은 연대하여 F에게 5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64670)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적극재산으로 원고 등에 대한 513,5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29,028,500,000원[= 28,515,000,000원(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 가액) + 513,500,000원(원고 등에 대한 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10면 6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32,613,003,063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중 원고 주장 금액의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 금액 중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는 21,759,067,977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그 인정근거는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14,000,000,000	9,492,603,3242) 원고는, 피고가 2017. 1. 20.경 관련 공매절차에서 14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은 점을 들어 140억 원이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4. 10. 7.경 F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14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
2	원고	600,000,000	600,000,000	을 제8호증의 22
3	서대문세무서	285,082,340	189,844,080	갑 제9호증
4	S	962,800,000	962,800,000	갑 제24, 42호증
5	T	2,300,000,000	2,300,000,000	갑 제25, 26호증
6	대한민국	1,000,000,000	1,000,000,000	갑 제30, 42호증
7	U	3,448,767,123	3,448,767,1233)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1.부터 2014. 10.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의 합계	갑 제28호증
8	법무법인 U	217,300,000	217,300,000	갑 제9, 42호증
9	V	262,645,150	262,645,150	갑 제42호증
10	W	419,450,150	419,450,000	갑 제9, 42호증
11	법무법인 X	2,200,000,000	2,200,000,000	갑 제9, 42호증

1	피고	14,000,000,000	9,492,603,3242) 원고는, 피고가 2017. 1. 20.경 관련 공매절차에서 14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은 점을 들어 140억 원이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4. 10. 7.경 F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14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
12	Y	53,580,000	52,580,000	갑 제9, 42호증
13	부평구청	221,539,150	221,539,150	갑 제9, 42호증 (원고 주장대로 인정)
14	인천광역시	29,539,150	29,539,150	갑 제9, 42호증
15	용산세무서	6,250,300,000	0	증거 없음4)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6	Z	117,000,000	117,000,000	갑 제36호증
17	AA 주식회사	150,000,000	150,000,000	갑 제37호증
18	AB 법률사무소	95,000,000	95,000,000	갑 제27호증
합계	32,613,003,063	21,759,067,977		

3)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21,759,067,977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 당시 F의 적극재산 합계액 29,028,500,000원은 위 소극재산 합계액

21,759,067,977원보다 많으므로5) , 이 사건 합의 당시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갑 제2, 3, 15, 16, 17,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등의 각 문서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 또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고가 140억 원을 수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합의임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원고 주장의 위 각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진석

판사 이종훈

판사 서여정

- 1) 단위: 원, 이하 같다.
- 2) 원고는, 피고가 2017. 1. 20.경 관련 공매절차에서 14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은 점을 들어 140억 원이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14. 10. 7.경 F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14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1.부터 2014. 10.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 4)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F의 O에 대한 채무를 F의 소극재산에 산입하는 방식 대신, ○ 지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12,699/25,398)에서 위 ○ 지분(2,002/25,398)만큼을 공제하여 F 지분을 10,697/25,398로 보고 적극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더라도, F의 적극재산은 26,587,174,265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 지분 가액 25,046,428,695원(= 59,468,000,000원

× 10,697/25,398, 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 폐기물 처리비용 1,027,245,570원(= 2,439,000,000원 × 10,697/25,398) + 원고 등에 대한 채권 513,500,000원], 소극재산은 18,310,300,854원(= 21,759,067,977원 - 3,448,767,123원)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